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13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수립 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과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가 20km로 제한되어 있어 필요시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50km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원거리 시설에 다수의 지구 사업비 투자로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안 제5조)

나.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전 검토 사항에 관계기관 협의 항목이 존재함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 청취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여 신속한 사업 이행 도모 (안 제23조)

다.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전체 사업비 항목만 존재하고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이 부재하여 사업의 신속한 이행 및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투자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효율적 사업 이행 도모 (안 제23조)

라.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 절차에 위원회 심의 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되어 개선대책 변경 절차 생략 항목 추가(안 제26조 및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1)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벅크빌딩 7층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2) 전자우편: iamsoojin96@korea.kr
- 3) 팩스: 044-868-8375